

교육과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공회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1.28., 2020.02.19.>

제2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양과정, 전공탐색과정, 전공과정, 특별과정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03.01., 2018.02.21., 2020.02.19.>

[제목개정 2018.02.21., 2020.02.19.]

제3조(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규정 적용 원칙) 교과목의 개설 여부나 이수구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입학 당시와 현행 교육과정 사이의 차이가 있을 경우 현행 학칙과 본 세칙에 따르며 이 원칙은 졸업 사정의 기준으로도 적용된다. 단, 현행 규정이 종전 규정보다 불리한 경우 경과규정을 두어 불리한 소급을 방지하도록 한다. <개정 2020.02.19.>

제4조(교양과정) 본 대학교 교육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교양교육과정은 기초핵심교육영역, 미래혁신교육영역, 미래혁신교육영역, 소양교육영역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5.28., 2015.01.28., 2016.11.16., 2017.02.15., 2018.01.23. 2023.01.18>

[제목개정 2018.02.21.]

제5조(교양과목 이수기준) 교양과목의 이수기준은 <별표1> 입학연도별 교양 교육과정 세부 이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03.01., 2014.05.28., 2016.03.23., 2016.06.22., 2017.02.15., 2018.01.23.2023.01.18>

② 삭제 <2023.01.18.>

③ 삭제 <2023.01.18.>

제5조의 2(비아메디아 채플) 비아메디아 채플은 재학 중 2학기 동안 2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편입학생의 경우 1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23.>

제6조(교양영역선택) ① 삭제 <2023.01.18.>

② <삭제 2014.05.28.>

③ 각 학과(부) 교수회는 해당 학과(부)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교양과정의 특정 영역 및 특정 교과목을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전공과정) ① 전공과정은 학과제의 전공과정과 전공제의 전공과정으로 구분되며 학과제인 경우는 아래 사항을 따르며 전공제인 경우는 전공제 교육과정에 관한 시행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9.07.31., 2020.02.19.>

② 전공과정의 교과목은 해당 전공 전공능력교과회의에서 편성안을 확정하되, 전공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수는 60학점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03.01., 2015.01.28., 2020.07.15.>

③ 각 학과(부)별 전공과정의 최소 이수 학점은 다음의 표와 같다. <개정 2015.01.28., 2019.08.28>

| 학과(부)명 | 전공학점 | | |
|----------|----------|-------------------|----------|
| | 2012학번까지 | 2013학번~ 2016학번 | 2017학번부터 |
| 신학과 | 60학점 | 60학점 | 60학점 |
| 영어학과 | 60학점 | 60학점 | 60학점 |
| 일어일본학과 | 60학점 | 60학점 | 60학점 |
| 중어중국학과 | 60학점 | 60학점 | 60학점 |
| 사회복지학과 | 60학점 | 60학점 | 60학점 |
| 사회과학부 | 80학점 | 80학점 | 76학점 |
| 신문방송학과 | 60학점 | 60학점 | 60학점 |
| 경영학부 | 60학점 | 60학점 | 60학점 |
| 디지털컨텐츠학과 | 60학점 | 60학점 | 60학점 |
| 컴퓨터공학과 | 60학점 | 80학점 | 80학점 |
| 소프트웨어공학과 | 60학점 | 60학점 | 60학점 |
| 정보통신공학과 | 80학점 | 80학점 | 77학점 |
| 글로벌IT학과 | 94학점 | 94학점 | 80학점 |

제7조의2(전공탐색과정) ① 전공탐색과정의 교과목은 각 전공 전공능력교과회의에서 편성안을 확정한다. <개정 2020.07.15.>

② 전공탐색과정 이수를 위해 전공탐색세미나를 포함한 1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속 융합자율학부 이외의 융합자율학부에서 개설한 전공탐색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02.21.]

제8조(필수과목) ① 필수과목은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과목을 폐설하는 경우에는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03.01., 2009.03.01>

② <삭제 2007.03.01.>

③ 각 학과별 전공필수 과목은 별도로 정한다.

제2장 특별과정

제9조(특별과정의 종류) ① 특별과정은 전공능력교과회의 또는 과정위원회가 개설하며, 전공기초과정, 전공심화과정, 복수전공과정, 부전공과정, 연계전공과정, 평생교육사과정, 교직과정, 해외창(교육)과정, 자기설계과정 등으로 구성된다. <개정 2020.07.15.>

② 전공능력교과회의는 해당학과에 적합한 특별과정을 선택 지정해야 하며, 해당학과 학생들은 지정된 특별과정 중 적어도 하나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0.07.15.>

제1절 전공기초과정

제10조(전공기초과정의 정의와 구성) ① 전공기초과정은 전공과정의 이수를 위해서 예비적으로 이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전공(타전공 포함)과정 또는 교양과정의 교과목으로 구성한다.

② 전공능력교과회의는 해당학과에 15학점 이상 38학점 이하의 교과목으로 구성되는 전공기초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0.07.15.>

제11조(학과별 전공기초과정) 학과별 전공기초과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절 전공심화과정

제13조(전공심화과정의 정의와 구성) ① 전공심화과정은 전공과정의 심화를 위해서 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전공과정의 교과목으로 구성한다.

② 전공능력교과회의는 해당학과에 15학점 이상 38학점 이하의 교과목으로 구성되는 전공심화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0.07.15.>

제14조(학과별 전공심화과정) 학과별 전공심화과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3절 복수전공과정

제15조(복수전공과정의 정의) 복수전공과정이라 함은 타 학과의 전공과정을 이수하여 재학 중 두 개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07.03.01>

제16조(범위)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과를 복수전공학과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과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복수전공자의 수를 학과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신청자격) 복수전공은 두 학기 수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취득학점이 34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03.01., 2011.04.06>

제18조(신청 및 허가) ① 복수전공 이수자는 각각의 전공학점을 4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전공 해당과목을 이수신청 이전에 부전공 또는 교양선택 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재학연한) <삭제 2007.03.01>

제20조(취소)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이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무처장에게 복수전공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취소한다. 이미 취득한 학점은 교양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신청 및 취소는 4학년 2학기 수강신청 이전까지 정해진 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7.03.01.>

제21조(학위수여) ① 복수전공을 이수한 자는 “졸업논문 규정”에 의하여 각 학과의 졸업논문에 통과하여야 한다.

② 복수전공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졸업사정을 거쳐 각각 해당학위를 수여한다. 단, 논문의 내용이 양 학과에 모두 적합할 경우에는 양 학과장의 동의에 의해 하나의 논문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학칙 및 제 규정 적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부전공과정

제23조(부전공과정의 정의) 부전공과정이라 함은 타 학과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제도를 말한다.<개정 2007.03.01>

제24조(신청자격) 부전공은 두 학기 수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부전공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취득학점이 34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03.01., 2011.04.06>

제25조(신청절차)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부전공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03.01.>

제26조(이수학점) ① 부전공은 각 전공학과별로 정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전공과 부전공학과에서 이수한 과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주전공학과의 과목만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전공 지정과목의 부족분은 부전공학과장이 지정하는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27조(수강지도) 부전공에 대한 수강지도는 부전공학과 학과장이 하되 필요에 따라 부전공 지도교수를

지명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취소) 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이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무처장에게 부전공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취소한다. 이미 취득한 학점은 교양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신청과 취소는 4학년 2학기 수강신청 이전까지 정해진 기간에 하여야 한다. 부전공 학과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전에 취득한 부전공 학점은 교양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7.03.01>

제5절 연계전공

제29조(연계전공의 정의) 연계전공이란 두 개 이상의 학과의 전공과정과 교양과정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학사학위 과정이다. <개정 2007.03.01.>

제30조(신청시기) 연계전공은 두 학기 수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연계전공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취득학점이 34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03.01., 2011.04.06.>

제31조(이수학점) 연계전공을 이수하려는 자는 연계전공학점을 4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제32조(신청 및 허가) 연계전공을 이수하려는 자는 연계전공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교육과정) 교육과정 구성은 해당 연계전공 학과장의 요청으로 해당 연계전공운영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세부적인 심의가 필요할 경우 교무처장은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07.03.01.>

[제목개정 2020.02.19.]

제34조(취소)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이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무처장에게 연계전공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취소한다. 단, 신청 및 취소는 4학년 2학기 수강신청 이전까지 정해진 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7.03.01.>

제6절 평생교육사 교육과정

제35조(목적)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평생교육사를 양성, 배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의 2(신청시기) 평생교육과정은 두 학기 수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사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취득학점이 34학점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1.04.06.>

제36조 <삭제 2011.04.06.>

제37조(이수과목 및 학점) ① 평생교육사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필수과목 15학점을 포함하여 2급은 30학점, 3급은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06.>

② <삭제 2011.04.06.>

③ 이수도중에 포기하는 경우 교양선택 학점으로 인정된다. <개정 2011.04.06.>

제38조(자격증 신청자격) ① 평생교육사과정으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자격증 신청은 4학년 2학기말 재학 중에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04.06.>

제39조(자격증 신청)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 신청서 1부(소정서식) <개정 2011.04.06.>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4. 기본증명서 1부 <개정 2020.09.23.>
5. 평생교육 현장실습평가서 1부
6. <삭제 2020.09.23.>

제40조(평생교육실습) ① 4주간의 현장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1.04.06., 2020.09.23.>

- ② 실습장소는 평생교육시설분야에서 실시한다.
- ③ 실습이수자는 평생교육실습기관으로부터 평생교육실습평가서에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06.>
- ④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생부담으로 한다.
- ⑤ 실습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의 「평생교육실습」 과목 운영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0.09.23.>

<별표 1> <삭제 2011.04.06.>

제7절 교직과정

제41조(목적) 이 내규는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본 대학교의 교직과정 이수 희망자를 위한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과목 및 이수학점) ① 교직과정 기본과목: 교직이론 7과목(14학점), 교직소양 2과목(4학점), 교육실습 4학점(교육봉사 2학점 포함) 등 모두 2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1.04.06.>

② 전공과목 : 교직과정 이수자는 50학점 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06.>

③ 전공학과별 기본이수 과목 : "표시과목"(중등교육 담당과목)의 관련학과의 기본이수 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06.>

④ 교직과정 이수자는 제 2학년부턴 최종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43조(이수신청)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 승인된 학과에 한하여 제 2학년초 20일 이내에 교직과정 신청서를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선발) ① 시기 : 과정 이수자중 제 3학년초 30일 이내에 선발한다.

② 비율 : 중등2급 정교사의 선발비율은 당해 학년 당해 학과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선발한다.

③ 기준 : 제 1학년과 제 2학년의 학업성적, 인성, 적성, 성적 등을 고려하여 교무처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제45조(교육실습) ①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이 가능한 자는 졸업년도에 협력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실습을 실시한다.

② 실습지도교수 및 교사에 대한 수당과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생 부담으로 한다.

제46조(운영) ① 교직과정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무처에서 정한다.

② 교직과정 신청은 2014년까지로 한다. <신설 2013.08.21.>

제8절 자기설계과정

제47조(자기설계과정의 정의)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하도록 설계한 전공, 교양과목의 수강 과정을 말한다.

제48조(신청시기) 자기설계과정은 3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기설계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취득학점이 34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03.01.>

제49조(이수학점) 최소 24 학점이상의 과목으로 설계한다.

제50조(신청, 허가, 수정) ① 자기설계과정을 이수하려는 자는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자기설계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부(과)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교무처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03.01.>

② 자기설계과정 이수자는 7학기가 끝나기 전에 ①항의 절차를 통하여 한 번에 걸쳐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제3장 사회봉사실천 과목에 관한 규정

제51조(목적) 사회봉사의 생활화와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위해 사회봉사실천 관련과목을 개설한다.

제52조(과목의 구성) 사회봉사실천 관련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재학 중 총 8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학점인정은 합격, 불합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1.19.>

1. 사회봉사 I (교양필수, 2학점) <개정 2016.11.16.>
2. 사회봉사 II (교양선택, 1학점)
3. 사회봉사 III (교양선택, 1학점)
4. 농촌봉사 (교양선택, 2학점)
5. 해외봉사 (교양선택, 2학점)
6. CUAC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교양선택, 2학점) <개정 2016.11.16.>

제53조(활동시간) 각 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봉사시간은 학기 당 3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수강절차) 사회봉사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해당학기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 소정의 이론 강의를 수강하고, 봉사활동 이전에 사회봉사활동신청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수강의 인정) <개정 2014.11.19.>

1. 농촌봉사, 해외봉사, CUAC 서비스러닝 프로그램은 사회봉사 대체과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6.11.16.>
2. 사회봉사 II,III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해당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야 하며, 농촌봉사와 해외봉사, CUAC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을 수행한 해당학기 또는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6.11.16.>
3. 사회봉사실천 관련과목 모두 소정의 증빙서류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제56조(사회봉사위원의 위촉) <삭제 2016.11.16.>

제4장 편입학생 학점인정 기준

제57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11조에 의거 편입학한 학생의 학점인정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8조 (학점인정한도) 편입학생의 학점은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총계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

으며, 본 대학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인정학점은 68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7.03.01.>

제59조(학점인정) ① 편입학생은 본교가 요구하는 교양과정 32학점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7.03.01.>

②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본 대학교 편입학과와 전공과정 및 특별과정에서 요구하는 교과목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경우, 해당과정 교수회의 심의에 따라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03.01.>

③ 인정된 학점은 소정양식에 따라 학적부에 기재한다.

제60조(이수과정) ① 편입학생은 본 대학교 해당 학년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② 편입학 해당 학년 이전 학년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과정과 특별과정의 교과목은 해당 과정의 학과장(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이수해야 한다.

제61조(필수과목의 대체) <삭제 2007.03.01.>

제62조(수학기간) 본 대학교 3학년에 편입한 학생은 4학기 이상을 반드시 수학하여야 한다.

제63조(성적) 편입학생은 졸업시 본교에서 취득한 성적만으로 평균평점을 산정한다.

제64조(학년 재 사정) <삭제 2007.03.01.>

제5장 인도창과정 (India Window Course)

제65조(목적) 변화하는 사회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글로벌 수준의 정보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인도창 과정(India Window Course)을 두고 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6조(운영) 인도창 과정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도창 과정 회의 (이하 "과정 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67조(과정회의 구성) 총장이 위촉하는 주임교수 1인과 3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담당 직원을 둘 수 있다.

제68조(과정 회의) 과정회의는 다음 사항을 정한다.

1. 인도창과정의 기본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2.19.>
2. 인도창과정의 정원, 지원자격 및 선발 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2.19.>
3. 수업료 및 기타 교육비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의 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2.19.>
5.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9조(교육과정의 구성과 기간) 현지 교육기관의 기본교육, 전문분야교육, 현지 유관기업에서의 인턴십, 영어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기간은 총 1년(두 학기)을 원칙으로 한다.

제70조(지원자격 및 절차) ① 전 학과(부) 학생은 지원자격이 있으나, 선발은 인도창과정 개시 학기를 기준으로 본교에서 4학기 이상(편입생의 경우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을 우선시 한다.

② 지원자는 부모 및 소속학과 교수 1인의 동의를 얻어한다.

제71조(강좌개설) 과정 회의는 현지 교육 과정 외에 <원격세미나>(학기 당 2학점) 등 필요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2조(전공학점 이수) 인도창 과정에 선발된 학생은 해당 학과의 전공학점에 있어서 복수전공 규정에

준하여 40학점 이상으로 하되, 자격증을 위한 법정과목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73조(학점인정) 현지 교육과정은 총 35학점 내외로 인정하며,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는 이수기간에 대한 비율에 따라 학점을 분할하여 인정한다.

제74조(수업료 처리원칙) ① 현지 교육 기관의 수업료 지불 당사자는 본교다. 따라서 대학은 학생들로부터 등록금 및 현지 교육 기관 수업료를 받아 일괄 지불한다.

②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지원금은 '해외위탁교육비'로 칭하며, 등록금의 50%까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그 비율은 <과정 회의>와 담당 부서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위탁교육비는 소속 학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나머지의 등록금은 학사 관리, 동 프로그램 운영비, 유사 프로그램 개발비 등으로 사용한다.

③ 해외위탁교육비는 현지 기관에서 요구하는 외화로 하며, 학생들로부터 받는 한화의 액수는 등록금 고지서 발부 시점의 환율로 산정한다.

④ 현지 기관의 평가를 전제로 두 번째 학기에 장학금을 지급하되, 총 액수는 20명을 기준으로 이공계 수준의 성적장학금+추천장학금으로 하며, 장학생 선발 및 금액 배분은 <과정 회의>에서 결정한다.

⑤ 중도에 탈락할 경우, 수업료의 환불 여부는 현지 기관과 대학교의 규정에 따른다.

제75조(증명서 발급) 본 과정의 수료증명서는 현지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며, 본교에서는 인도창 과정 수료에 대한 사항을 성적증명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제6장 중국어해외연수과정 <삭제 2011.04.06>

제76조 <삭제 2011.04.06>

제77조 <삭제 2011.04.06>

제78조 <삭제 2011.04.06>

제79조 <삭제 2011.04.06>

제80조 <삭제 2011.04.06>

제81조 <삭제 2011.04.06>

제7장 러시아창 과정 (Russia Window Course) <삭제 2011.04.06>

제82조 <삭제 2011.04.06>

제83조 <삭제 2011.04.06>

제84조 <삭제 2011.04.06>

제85조 <삭제 2011.04.06>

제86조 <삭제 2011.04.06>

제87조 <삭제 2011.04.06>

제88조 <삭제 2011.04.06>

제89조 <삭제 2011.04.06>

제90조 <삭제 2011.04.06>

제91조 <삭제 2011.04.06>

제8장 일본창 과정 (Japan Window Course) <삭제 2011.04.06>

제92조 <삭제 2011.04.06>

제93조 <삭제 2011.04.06>

제94조 <삭제 2011.04.06>

제95조 <삭제 2011.04.06>

제96조 <삭제 2011.04.06>

제97조 <삭제 2011.04.06>

제98조 <삭제 2011.04.06>

제99조 <삭제 2011.04.06>

제100조 <삭제 2011.04.06>

제9장 피스보트 과정 (Peace Boat Course)

제101조 <삭제 2020.02.19.>

제102조 <삭제 2020.02.19.>

제103조 <삭제 2020.02.19.>

제104조 <삭제 2020.02.19.>

제105조 <삭제 2020.02.19.>

제106조 <삭제 2020.02.19.>

제107조 <삭제 2020.02.19.>

제108조 <삭제 2020.02.19.>

제109조 <삭제 2020.02.19.>

제10장 중국창 과정 (China Window Course)

제110조(목적) 한·중 경제협력 및 문화교류 분야에 능동적으로 활동할 글로벌 수준의 인력 양성을 위해 중국창 과정(China Window Course)을 두고 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1조(운영) 중국창 과정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국창 과정 회의 (이하 "과정 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112조(과정회의의 구성) 총장이 위촉하는 주임교수 1인과 3인 내외의 과정교수로 구성한다.

제113조(과정 회의) 과정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중국창과정의 기본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2.19.>
2. 중국창과정의 정원, 지원자격 및 선발 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2.19.>
3. 수업료 및 기타 교육비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의 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2.19.>

5.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4조(교육과정의 구성과 기간) 현지 대학의 중국어교육, 전문분야교육, 현지 유관기관에서의 인턴십 등으로 구성되며, 기간은 총 1년(두 학기)을 원칙으로 한다.

제115조(지원자격 및 절차) ① 중어중국어학과 학생 및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중어중국어학을 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본교에서 4학기 이상(편입생의 경우 1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을 우선시 한다.

② 지원자는 보호자 및 소속학과 교수 1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6조(강좌개설) 현지 교육 과정 외에 <원격세미나> 등 필요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고, 출발 전 본 과정의 필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7조(학점인정) 1년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현지학점을 포함하여 38학점까지 인정하며, 학생 사정에 의해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는 교육이 완료된 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을 인정한다.

제118조(증명서 발급) 본 과정의 수료증명서는 현지 대학에서 발급하며, 본교에서는 중국창 수료에 대한 사항을 성적증명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제11장 필리핀 해외 영어 교육 프로그램

제119조(목적) 국제화사회에 능동적으로 활동할 글로벌 수준의 인력 양성을 위해 “필리핀 해외 영어 프로그램”을 두고 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0조(운영) “필리핀 해외 영어 프로그램”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리핀 해외 영어 프로그램 과정회의 (이하 “과정 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121조(과정회의의 구성) 총장이 위촉하는 주임교수 1인과 3인 내외의 과정교수로 구성한다.

제122조(과정 회의) 과정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프로그램의 기본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2.19.>
2. 프로그램의 정원, 지원자격 및 선발 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2.19.>
3. 수업료 및 기타 교육비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의 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2.19.>
5.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3조(교육과정의 구성과 기간) 현지 대학의 영어교육으로 구성되며, 기간은 총 1년(두 학기)을 원칙으로 한다.

제124조(지원자격 및 절차) ① “필리핀 해외 영어 프로그램” 현지 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본교 2학년 1학기 이상(3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편입생의 경우 “필리핀 해외 영어 프로그램” 현지 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③ 지원자는 보호자 및 소속학과 교수 1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5조(강좌개설) 현지 교육 과정 외에 <원격세미나> 등 필요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고, 출발 전 본 과정의 필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6조(학점인정) 1년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현지학점을 포함하여 38학점까지 인정하며, 중도에 그만

두는 경우는 이수기간에 대한 비율에 따라 학점을 분할하여 인정한다.

제127조(증명서 발급) 본 과정의 수료증명서는 현지 대학에서 발급하며, 본교에서는 필리핀 교육과정 수료에 대한 사항을 성적증명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제12장 NGO해외연수과정

제128조 <삭제 2020.02.19.>

제129조 <삭제 2020.02.19.>

제130조 <삭제 2020.02.19.>

제131조 <삭제 2020.02.19.>

제132조 <삭제 2020.02.19.>

제133조 <삭제 2020.02.19.>

제134조 <삭제 2020.02.19.>

제135조 <삭제 2020.02.19.>

제136조 <삭제 2020.02.19.>

제137조 <삭제 2020.02.19.>

제138조 <삭제 2020.02.19.>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학칙개정(1996.2.29)에 따라 전공이수 의무학점 및 전공필수과목 이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과규정을 정한다.
 1. 개정된 전공이수 의무학점의 범위 내에서 학과별로 전공필수 과목을 정한다. 종전의 전공기초과목은 전공필수과목으로 통합한다.
 2. 95년 이전에 입학, 또는 편입한 학생의 전공이수 의무학점은 58학점으로 하며, 전공필수 학점은 48학점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7년 3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중 제1장 제3조는 97학년도에 제2학년생부터 적용한다. 단, 97학년도에 제3학

년 이상인 학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중 제15조 제2항은 98학년도의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9년 1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0년 2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1년 3월 19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1년 11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2년 3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3조, 5조, 6조는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며 복학생 및 재입학생은 복학 및 재입학 학년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2년 5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2년 6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51조는 2001학년 2학기 중국어 연수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3년 6월 1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3년 10월 8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9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85조는 중국어해외연수과정인 중국창 과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중어중국학과 학생들에 한해서 2005학년도 2학기에 실시하는 중국창 과정까지 한 학기 연수를 허락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11월 1일부터 변경 시행 한다.
- ② (경과조치) 제2조는 2004학년도 1학기에 편입학 한 자부터 적용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변경 시행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변경 시행 한다.
- ② (경과조치) 제12장 NGO해외연수과정은 2006년 1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변경 시행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2월 9일부터 변경 시행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4월 6일부터 변경 시행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8월 21일부터 변경 시행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2014년 5월 28일 개정 세칙은 2013년 3월 1일자 소급 적용한다.
- ② (경과조치) 2013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하되, 필수에서 해제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기존 재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11월 19일부터 변경 시행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월 28일부터 변경 시행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23일부터 변경 시행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6월 22일부터 변경 시행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11월 16일부터 변경 시행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12월 21일부터 변경 시행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2월 15일부터 변경 시행 한다.
- ② (경과조치) 제4조, 제5조는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에게 적용된다. 단,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는 개정 이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1월 23일부터 변경 시행 한다.
- ② (경과조치) 제4조, 제5조는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에게 적용하며,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는 개정 이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2월 21일부터 변경 시행 한다.
- ② (경과조치) 제2조, 제7조의 2는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에게 적용하며,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는 개정 이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7월 31일부터 변경 시행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8월 28일부터 변경 시행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2월 19일부터 변경 시행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7월 15일부터 변경 시행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9월 23일부터 변경 시행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3년 1월 18일부터 변경 시행 한다.

<별표1> 입학연도별 교양 교육과정 세부 이수 기준

<공통 기준>

- ① 과목지정 필수과목은 이수학점에 관계 없이 해당 과목 이수 시 인정함.
(대학생활세미나I, 대학생활세미나II, 말과글, 비아메디아채플)
- ② <사회봉사I>은 사회봉사 그룹(사회봉사I, 해외봉사, 농촌봉사, CUAC서비스러닝 프로그램) 중 1과목만 이수하면 인정함

<입학연도별 세부 기준>

■ 학부제 개편 이전 입학생 (2017학년도 입학생까지)

| 학년도 | 과목지정 필수과목 | 교양 이수학점 | 비고 |
|-----------------------------|--|---------|---------------------------|
| 2015학년도 입학생까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아메디아채플 2회(2과목) • 사회봉사I | 32학점 | 학과에서 융합자율학부로 소속 변경한 학생 포함 |
|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입학생까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아메디아채플 2회(2과목) • 사회봉사I • 대학생활세미나I • 대학생활세미나II • 말과글 | | |

■ 학부제 입학생 (2018학년도-2022학년도 입학생까지)

| 구분 | 과목지정 필수 | 영역지정 필수 | | | 교양 이수 학점 |
|-------|--|---------|-------------------------------------|------------|----------|
| | | 핵심역량 | 영역 | 이수학점 (과목수) | |
| 이수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활세미나I • 대학생활세미나II • 인권과평화 • 과학기술과에콜로지 • 말과글 • 데이터활용및분석 • 사회봉사I • 비아메디아채플 2회(2과목) | 핵심역량 | 영역 | 이수학점 (과목수) | 34학점 |
| | | 가치역량 | 인간·인권 생명·평화 민주시민 | 6학점 (2과목) | |
| | | 대안역량 | 융·복합적 사고 조사·분석·정보활용 대안제시·문제해결 | 6학점 (2과목) | |
| | | 실천역량 | 민주적 소통 연대와 공동체적 실천 | 6학점 (2과목) | |
| 비고 | ① 과목지정 필수 과목은 영역 지정 필수 이수학점에서 제외 ② 핵심역량 별 이수 학점 - 가치역량 「인간·인권」, 「생명·평화」, 「민주시민」 세 영역 중 최소 두 영역에서 1과목(3학점)씩 총 2과목(6학점)이수 - 대안역량 「융·복합적 사고」, 「조사·분석정보 활용」, 「대안제시·문제해결」 세 영역 중 최소 두 영역에서 1과목(3학점)씩 총 2과목(6학점)이수. - 실천역량 「민주적 소통」, 「연대와 공동체적 실천」 두 영역 중 한 영역에서 1과목 (3학점)씩 총 2과목(6학점)이수 | | | | |

■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 영역 | 기초핵심교육 | 미래혁신교육 | | 소양교육 | 교양이수 학점 |
|---------------------|--|---------------|----------|----------|------------|
| | 과목지정 필수 | 교양선택 (SEED영역) | 교양선택 | 세부영역 | |
| 과목 / 세부 영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활세미나I • 대학생활세미나II • 인권과평화 • 과학기술과에콜로지 • 말과글 • 데이터활용및분석 • 사회봉사I | 과학기술과 미래사회(S) | 인간과 종교 | 정서적체험 | 34학점 |
| | | 경제와 미래사회(E) | 문학·문화·예술 | 신체적체험 | |
| | | 환경과 미래사회(E) | | 사회적체험 | |
| | | 다양성과 미래사회(D) | 지역과 세계 | 창업과특허/취업 | |
| | | | | 비아메디아채플 | |
| 비고 | <p><SEED 영역에서 총 2과목(6학점) 이상 이수> 단, ① 인문융합자율학부, 사회융합자율학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생은 <과학기술과 미래사회(S)>영역에서 1과목(3학점) 이상 이수 ② IT융합자율학부생은 <경제와 미래사회(E)>, <환경과 미래사회(E)>, <다양성과 미래사회(D)> 영역 중에서 1과목(3학점) 이상 이수 <비아메디아채플-2회(2과목)은 교양 필수></p> | | | | |